

[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◎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, 신원인수인입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계약기간

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
계약목적

시설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(사업)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.

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 주·야간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100분의40~100분의60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 (식재료비, 이.미용비,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)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100분의40~100분의60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.
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대상자는 제41조(이용계약)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보호자)을 지정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호자)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
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
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
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시설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
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
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
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

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
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계약기간이 만료한 때

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이용자가 사망한 때

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

이용자가 입소(이용)계약서 내지 서양서 상의 입소(이용)규정을 위반한 때

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,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

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

전 5호 내지 전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

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파주시은빛사랑채